

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
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
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국 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대한 액화
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농어촌
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등(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)

나.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
라.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선정 등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마. 사업 위탁 및 안전관리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바. 협약체결 및 지도·감독 등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2022년 12월 기준,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공급현황¹⁾은 69.8%이며, 괴산군·단양군·보은군·영동군의 경우 보급률이 20% 미만임
- 특히,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청주시(85.1%)와 가장 낮은 괴산군(11.3%)과의 차이는 73.8%로 충북도 내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매우 커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
-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지원계획 수립 등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‘충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’ 하고자 한 목적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
- 안 제3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(이하 “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”이라 함)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

1)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공급현황(2022. 12. 기준)

공급지역	계	1권역			2권역	3권역		4권역		5권역		
		청주	증평	괴산	충주	제천	단양	진천	음성	보은	옥천	영동
보급률(%)	69.8%	85.1%	83.3%	11.3%	80.6%	54.4%	16.3%	60.1%	54.3%	14.5%	29.2%	19.7%

- **안 제4조 및 안 제5조**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함)을 매년 수립하고, 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
- **안 제6조 및 안 제7조**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등 사업의 절차와 전문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**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**까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지원²⁾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약체결,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충청북도 외 타 시도의 입법례는 아래 표와 같음

연번	조례명	시행일
1	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	2017. 6. 12.
2	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	2022. 6. 30.
3	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	2017. 11. 13.
4	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	2017. 12. 21.
5	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	2019. 10. 15.
6	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4. 1.
7	전라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	2021. 2. 18.

2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6조(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.
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 부담이 많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의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이 조례안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 범위에 속하고,
- 상위법령³⁾에 근거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체계 등 조례 제정의 법률적 문제가 없음
- 또한,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 등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

3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7조(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